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832

발의연월일: 2022. 2. 24.

발 의 자:김영배·김성환·정춘숙

이탄희 • 이용우 • 이정문

허종식 • 유호중 • 정필모

최기상 · 김원이 · 이수진(비)

신동근 · 오기형 · 김종민

백혜련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은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 ·시·군의원정수는 최소 2인이고,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전체 1,035개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 중에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1개이나,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 에 해당하여,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 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.

국회의원 선거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.

이에 한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 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거대 정당 독 식 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함(안 제26조제2항, 같은 조 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2인 이상 4인 이하로"를 "3인 또는 4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 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"를 "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	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
定) ① (생 략)	定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치구・시・군의원지역구	②
는 인구・행정구역・지세・교	
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	
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	
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	
구자치구・시・군의원정수는 2	<u>3인 또는 4인</u>
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	<u>으로</u>
자치구・시・군의원지역구의	
명칭・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	
•도조례로 정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자치구・시・군의원지역구	<b>4</b>
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	
내에서 획정하여야 <u>하며, 하나</u>	<u>한다</u> .
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	
구자치구・시・군의원을 4인	
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	
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	
<u>있다</u> .	